#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983

발의연월일: 2025. 2. 7.

발 의 자: 강선우 · 위성곤 · 서미화

전현희 · 김동아 · 김 윤

진성준 · 조승래 · 정태호

남인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과 역할이 임상시험에 한정되어 있어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역할에 한의약 연구·개발을 포함하고 이에 맞춰 그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연구 및 개발에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안 제1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의약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한방임상센터"를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0조제3항에 따른 한방의료"를 "제10조에 따른 한방의료 및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한방의료"로, "한방임상센터"를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한방임상센터"를 각각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한다.

제3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 연구개발성 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방임상센터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방임상센터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1조(한방임상센터 설치 등) ① 제11조(한의약임상연구센터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3항 등) ① -----제10조 에 따른 한방의료 및 한의약 에 따른 한방의료 및 한약을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할 구・개발과 한방의료-----수 있다. -----한의약임상연구센터-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2) ----따른 한방임상센터의 효율적인 ----한의약임상연구센터-----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한방의료 기관 또는 단 체를 한방임상센터로 지정하여 ----한의약임상연구센터-----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① <신 설>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 연구 개발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 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 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

<u>에게 재정적·행정적·기술적</u> <u>지원을 할 수 있다.</u>